

제300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24. 1. 9.(서면심의)

□ 안 건 명 : 봉은 및 삼성배수지 급수구역 공급체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용역발주심의)

위 안전에 대한 제300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붙임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채택」을 의결함

【주요 심의내용】

- 신공법, 신기술 검토에서 굴착공사로 인한 도로점유시 차량정체의 매연발생, 도로 굴착/복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환경적인 요인을 저감할 수 있도록 비굴착 교체 및 터널공법 적용 검토
- 기계설비의 운전특성과 해당 기자재의 내구연한, 소모품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예비기 또는 계열 분할 등을 검토하도록 과업내용 추가를 검토 바람(p33)
-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지침 제39조(보안성검토 신청)에 의하여 “ 16) 계측 제어설비 감시제어 시스템의 통신망은 보안을 위하여 별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신규 통신회선 설치시 이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내용 추가 (40쪽 사. 계측제어설비 16)항 추가)

붙임 :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

본 검토서는 2024.1.2.(화) 18:00까지 e-mail(hjyhgu@seoul.go.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제300차 봉은 및 삼성배수지 급수구역 공급체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발주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적정함- 국가안전화재기준 ⇒ 국가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지식경제부 ⇒ 산업자원통상부- p41 8. 시운전 시행방안 가. 연계되어 신슈 ⇒ 신규- p45 시설안전공단 ⇒ 국토안전관리원- p45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00조제1항제1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p58 나. 과업수행 범위 2)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 - 신공법, 신기술 검토에서 굴착공사로 인한 도로점유시 차량 정체의 매연발생, 도로 굴착/복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환경적인 요인을 저감할 수 있도록 비굴착교체 및 터 널공법 적용 검토 -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서울특별시 2020.7.1.)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검토	
종합의견	(원안채택)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2024년 1월 2일

심의위원 :

본 검토서는 2024.1.2.(화) 18:00까지 e-mail(hjyhgu@seoul.go.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제300차 봉은 및 삼성배수지 급수구역 공급체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건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편적인 조치로 개선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중장기개선 방향을 조기 추진하는데 공감함.- 서울시공공디자인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1장10.마.(p.11)에 공공디자인심의 일정 추가 반영- 설계의경제성 등 검토지침, 서울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 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조례,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가이드라인, 유니버설디자인적용지침 등 누락된 기준을 1장21.(p.16~p.17)에 추가 반영- VE의 시행근거를 1장23.(p.21)에 구체적으로 제시-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및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경 기본 조례에 따라 계획할 수 있도록 3장.2.(p.32)에 지침 추가-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3장.2.(p.33)에 지침 추가- 6장.3.(p.48, p.55) 성과품에 각종 심의자료 포함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24년 1월 2일

심의위원 :

※ 서면심의이므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글파일 별도 송부)

본 검토서는 2024.1.2.(화) 18:00까지 e-mail(hjyghu@seoul.go.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제300차 봉은 및 삼성배수지 급수구역 공급체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공통	1. 주요업무 사전승인 항목에 과업참여자 국외 출장 사항을 추가 검토 바랍니다.(p2)	
기계설비	2. 기계설비의 운전특성과 해당 기자재의 내구연한, 소모품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예비기 또는 계열 분할 등을 검토하도록 과업 내용 추가를 검토 바랍니다.(p33) 3. 기후변화 대비 외기온도 상승에 따른 기자재 효율저하를 대비 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 외기온도를 검토하도록 과업내용 추가를 검토 바랍니다.(p33)	
종합의견	전반적으로 과업내용서가 충실히 작성되었으나, 상기 검토 조건으로 조건부 채택을 권고 합니다.	

2024년 1월 2일

심의위원 :

본 검토서는 2024.1.2.(화) 18:00까지 e-mail(hjyhgu@seoul.go.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제300차 봉은 및 삼성배수지 급수구역 공급체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전기전력 설 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현지답사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저장하는 장치가 잘 사용하지 않는 <u>CD</u>로 되어 있어 이 부분을 <u>CD</u> 또는 <u>USB</u>로 변경, 또는 <u>USB</u>로 변경하면 용역사 업무 수행이 편리함(24쪽 3.현지답사 다.항)2. 현재 내선규정이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변경되어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u>내선규정을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u> 변경요(37쪽 4.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가. 일반사항 1)항)3. 본 용역은 봉은 및 삼성배수지 급수구역 공급체계 개선, 삼성가압장 증설에 관한 사항으로 <u>정수장을 가압장으로</u> 변경요(39쪽 사. 계측제어설비 2)항)4.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지침 제39조(보안성검토 신청)에 의하여 “ <u>16) 계측제어설비 감시제어 시스템의 통신망은 보안을 위하여 별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신규 통신회선 설치시 이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u>” 내용 추가(40쪽 사.계측제어설비 16)항 추가)5. “ <u>4) CCTV 설비의 통신망은 보안을 위하여 별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신규 통신회선 설치시 이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u>” 내용 추가(41쪽 라.CCTV설비 4)항 추가)6. <u>완충저류시설은 본 과업과 관련 없으므로 문구 삭제요</u>(41쪽 6. 설계도서 작성 다.항)7. <u>신슈를 신규로</u> 수정(42쪽 8.시운전 시행방안 가.항)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24년 1월 2일

심의위원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제300차 봉은 및 삼성배수지 급수구역 공급체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토 목	1. 현지답사 시의 촬영된 사진 또는 비디오는 사용에 제한이 없는 USB로 제출 가능하도록 보완하기 바람 2. 관련 법령 등 최신화하기 바람 - p.6)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087호)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3.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다음 명칭은 법령 규정에 따라 일관되게 수정하기 바람 -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4.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명칭으로 수정하기 바람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아리수본부 5. 과업내용서의 오타 수정 - p.7) 기술인문위원회 → 기술자문위원회 - p.41) 가. 기존시설물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u>신슈</u> 시설 → <u>신규</u> 시설	
기 계	6. 과업내용서 “기계설비”에 다음 사항을 추가할 것 - 펌프 설계 시 임펠러의 재질을 캐비테이션에 의한 침식에 대하여 강한 재질을 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전 기	7.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p. 36)에 다음 내용을 수정할 것 - 내선규정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8.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p. 36) 및 정보통신설비(p. 39)에 다음 내용을 보완할 것 - 전기 및 통신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 공사구간에 철거되는 발생품을 정확히 현장 조사하여 처리계획을 제시한다.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24년 1월 일

심의위원 :